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34호

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의 금융취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6월 30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편취급국의 금융 취급수수료 지급

1. 우편환 취급수수료
   가. 우편환 발행 : 우편환요금 수납액(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)의 100분의 80 상당액
   나. 우편환 지급 : 건당 100원

2.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: 건당 90원

3. 수입인지 판매 : 4%(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)

부 칙

1.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 2001-11호(2001.3.12.)는 폐지한다.